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0646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303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064640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우희창, 장지혜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태우, 이춘상

변론 종결 2021. 4. 14.

판결 선고 2021. 5. 12.

주문

1. D(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57,164,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7,164,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및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각 채무의 이행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4.7.30.	F	14.8.1.~15.7.31.	70,000,000원
2	2014.11.28.	G	14.11.28.~15.11.27.	1,730,000원

2) 소외 회사가 2015. 7. 9.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무를 각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보험자들의 청구에 따라 2015. 8. 25. G에게 1,730,000원, 2015. 10. 26. F에게 70,0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2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5644호로 'D은 원고에게 91,816,98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28163호로 'D은 원고에게 2,309,850원 및 그 중 1,73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각 발령하였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D의 처분행위

D은 2015. 3. 16. 자녀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17109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증여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에 의해 보험료 10,676,560원의 채권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5. 10. 1.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F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 잔액이 금 1,015,750,228원이었고, 이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매출은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5. 6.경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하여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3.경부터 대여료 연체가 시작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실제로 2015. 7. 9.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8. 25. G에게 보험금 1,730,000원을, 2015. 10. 26. F에게 보험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D의 무자력

-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 2)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 3)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D은 2015. 3. 16.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합계: 606,152,906원

(1) 이 사건 부동산: 202,543,000원(2015. 3. 16. 기준 감정가액)

(2) 강원 평창군 H콘도 I호 중 10분의 1지분: 14,300,000원(2015. 5. 8. 거래금액)

(3)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호의 재건축 분양권: 389,309,906원(2015. 7. 1. 거래가액
889,309,906원 - 근저당채무 500,000,000원)

나) 소극재산 합계: 1,229,910,591원

(1) 이 사건 구상금채권: 원고가 구하는 원금 71,730,000원

(2) 수출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94,000,000원

(3)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864,180,591원

다) 피고들은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채무는 이 사건 사해행위 후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일인 2015. 9. 1. 발생하였지만 2009. 4. 29. D이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소외 회사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사해행위 시점과 매우 가까운 장래인 2015. 9. 1.경 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무도 D의 무자력을 판단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3. 24.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D의 요청에 의해 2015. 9. 9. 근저당권자를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소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L와의 거래 계속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들은 채권자 요구에 의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한 경우 그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를 지적하나,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피고들의 L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아니라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이고, 증여행위는 대가없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 스스로 2020. 11. 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소외 회사의 사업계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D이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결혼자금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채무초과상태인 D이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그 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대가없이 증여한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아니라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에 그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D과 피고들 사이에 2015. 3.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인 2015. 10. 1. 위 압류들이 해제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3. 현재 감정가액은 260,426,000원이고, 위 압류채권액은 10,676,560원이어서 피고들의 각 1/2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각 124,874,720원 $\{=(260,426,000\text{원} - 10,676,560\text{원}) \times 1/2\}$ 이 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29. 현재 채권액인 114,328,573원의 각 1/2 금액인 57,164,286원 $(= 114,328,573\text{원} \times 1/2)$ 이어서 결국 위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57,164,286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다) 그렇다면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각 57,164,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7,164,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백규

별지